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0조에 따라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장추천위원회) ① 학장후보 추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장후보 피추천자 및 당연직 인사위원을 제외한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현 학장 임기만료 전 10주 내지 12주 사이에 구성하고 학장이 임명되는 날 해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최연장자로 하며 간사는 교무부학장이 맡는다.

제3조(학장후보의 선정) 위원회는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명 이상의 학장후보를 선정한다. 다만, 초임 학장이 연임을 희망하고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천되는 경우는 연임 학장후보로 선정한다.

제4조(학장후보의 추천) 위원장은 선정된 2명 이상의 학장후보 또는 연임으로 추천되는 학장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학장의 유고) ① 학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된 학장후보 추천 절차에 따라 신임 학장후보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2조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장후보 추천 과정을 관리한다.

제6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 및 법적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제100호, 2013.3.26.)

이 규정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